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654

발의연월일: 2024. 10. 11.

발 의 자: 구자근 · 김선교 · 인요한

최수진 · 김석기 · 박준태

권영세 • 박성민 • 박덕흠

김성원 · 김도읍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에 정책결정기구로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두고, 한국은행권 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관련 사항, 한국은행통화안전증권 발행, 매출, 환매 등에 관한사항, 기준금리 결정 등 통화신용정책에 관련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고 있음.

이처럼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책사항들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요약된 의사록 형태로 제공되고,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도 극히 제한된 대상에게만 비공개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의식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재 공개방식을 유지하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후에는 익명으로 처리하지 아니한 의사록 전문

을 상시 공개하여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원들의 책임의 식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 원이 임기만료된 경우에는 의사록 전문(익명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 ③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금융통화위원회는 해당 금
	<u>용통화위원회 회의에 출석한</u>
	위원 전원이 임기만료된 경우
	에는 의사록 전문(익명으로 처
	리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